

남해안 게절도시 미랑 여수

제2023-55호 2023년 6월 19일(월) 人



보

시정지표

소통화합 **열린도시** 인재육성 **산업도시**

문화예술 복지도시

해양관광 휴양도시

기후변화 선도도시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홍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기 타

○ 여수시 규칙 제814호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1

회				
람				

제7회 여수시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청 부설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3년 6 월 / 9 일

여수시장 305기까지

여수시 규칙 제814호 붙임 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규칙 제814호

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1호 중 "21:00부터"를 "20:00부터"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"21:00까지"를 "20:00까지"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"21:00까지의"를 "20:00까지의"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20,000원"를 "10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부설주차장의 운영) ① (생	제3조(부설주차장의 운영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운영하	②
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.	
1. 평일 <u>21:00</u> 부터 다음날 07:00까	1 <u>20:00</u>
지	
2. 토요일 및 「관공서의 공휴	2
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	
일	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사 등	③
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	
유료운영시간(07:00부터 <u>21:00</u>	<u>20:00</u>
까지, 이하 같다)을 조정할 수	,
있다. 이 경우 사전에 그 이유	
및 변경된 유료운영시간을 공	
지하여야 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주차요금 징수) ①・② (생	제6조(주차요금 징수) ①·② (현행
략)	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③ 유료운영시간 이후에 나가는	③
차량에 대하여는 주차한 시점	
부터 <u>21:00</u> 까지의 요금을 징	<u>20:00</u>
수하고, 유료운영시간 이전에	
들어온 차량에 대하여는 07:0	
0부터 나가는 시점까지의 요	
금을 징수한다.	
제8조(월 정기주차권) ①・② (생	제8조(월 정기주차권) ①·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제1항에 따른 월 정기주차권	③
의 금액은 <u>20,000원</u> 으로 한다.	<u>10,000원</u>